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9년 7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 제안이유

-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편의 제공 및 사용료 할 인, 감면 등의 혜택을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포함할 것을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기획과-473호, 2008. 12. 24)함에 따라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개장에 따른 체육시설의 등재, 전용 사용 료 및 연습사용료를 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 임

□ 주요내용

가.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을 부천시 체육시설에 등재함(안 별표1) 나.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에 대하여 전용 사용료 감면(100분의 50 이하)규정을 정함.(안 제11조제1항제2호 아목, 신설)

다. 시설별(부천체육관, 성주산생활체육공원, 북부수자원 생태공원, 오정대공원 등)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를 일원화함(안 별표2)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보면 부적	○ 생활체육대회 사용료 감면에 대한
정한 보조금 집행을 개선하고자	권고가 있었음.
하는 근본 취지인데 이번 조례 개정	
과 관련이 있는가?	
○ 우리 시는 권고안과 관련이 없는데	○ 그러함.
사용료를 감면하겠다는 취지인가?	(이상 체육청소년과장)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제427호
의	결	2009. 7. 10.
년 _월	월일	(제153회)

제출년월일: 2009. 6. 2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편의 제공 및 사용료 할 인, 감면 등의 혜택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포함할 것을 권 고(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기획과-473호, 2008. 12. 24)함에 따라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개장에 따른 체육시설의 등재, 전용 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를 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을 부천시 체육시설에 등재함(안 별표1)
- 나.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에 대하여 전용 사용료 감면(100분의 50 이하)규정을 정함.(안 제11조제1항제2호 아목, 신설)
- 다. 시설별(부천체육관, 성주산생활체육공원, 북부수자원 생태공원, 오정대공원 등)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를 일원화함(안 별표2)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아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비영리 목적의 경기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생 략)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마. (생 략)		가.~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사. (생 략)		가.~사. (현행과 같음)
<u><신 설></u>		아.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비영리 목적의 경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별지"

[별표 1]

<u>부천시 체육시설</u>(제2조관련)

명 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주경기장	육상, 축구, 인라인스케이트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체력단련장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
조하 이 도기	보조경기장	육상, 축구, 일반행사	"
종합운동장	야구장	야구,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5번지
	궁도장	궁도, 체육행사,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인공암벽	암벽	"
	테니스장	테니스	"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4번지
부천체육관	체력단련장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
	인조잔디구장	축구, 배구, 족구, 농구, 일반행사	"
	보조운동장	축구, 족구, 씨름, 일반행사	"
, , , , , , ,	체육관	농구, 배드민턴, 탁구 각종 강습 프로그램, 일반행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0-1번지
소사국민 체육센터	체력단련장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
71197 (22)	수영장	수영,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
송내사회	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농구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57번지
체육관	체력단련장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
서촌 다목적체육관	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6번지
	원미테니스장	테니스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산16-2번지
테니스장	복사골테니스장	테니스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12번지
	제1배수지테니스장	테니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97-5번지
성 무 정	주경기장	궁도, 일반행사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산2-26번지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농구, 족구, 배구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중동 788번지
원미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농구, 족구, 배구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산16-3번지
성주산	인조잔디구장	육상, 축구, 족구, 농구, 인라인트랙	부천시 소시구 소사본동 산71번지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테니스	"
북부수자원 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축구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
	파크골프장	파크골프	"
남부수자원	천연잔디구장	축구, 일반행사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산456-1번지
생태공원	풋살경기장	풋살	"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축구, 일반행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1번지 일원

전용사용료(제8조관련)

(단위: 원)

지성별		11 Q J H		체육경기		체육이외 행사	
시설별		사용구분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육상장	주간	40,000	60,000	200, 000	300,000
		(트랙)	야간	60, 000	90,000	300, 000	400, 000
	주 경기장		조기	300, 000	500,000		
·	70/1/0	천연잔디 구장	주간	660, 000	2,000,000	1, 500, 000	2, 200, 000
종 합 운동장		1 8	야간	1,500,000	2, 400, 000	2,000,000	2, 600, 000
700	u 코 커리	71.	오전	40, 000	60,000	200, 000	200 000
	보조경기	ેં ઉ	오후	40,000	60,000	200, 000	300, 000
	야구장		주간	40, 000	60,000	80, 000	120, 000
	인공암벽		주간	40, 000	60,000		
기미스트	d.		오전	40, 000	60,000	200, 000	200 000
시민운동경	ર્		오후	40, 000	60,000	200, 000	300, 000
이미스트	d.		주간	80, 000	120,000	150, 000	250, 000
원미운동경	ર્		야간	80, 000	120,000		
	체육관		주간	150, 000	200, 000	300, 000	400, 000
	세파단		야간	200, 000	300,000	400, 000	550, 000
부 천	레라이크	-1 -7].	주간	60, 000	80,000	100, 000	150, 000
체육관	체력단련	7.3	야간	80, 000	100, 000	150, 000	200, 000
	нио	= zl-	오전	20,000	30,000	50, 000	80, 000
	보조운동	5-3	오후	20, 000	30,000		
			오전	40, 000	60,000	60, 000	80,000
송내사회체육관		오후	40,000	60,000	60, 000	80,000	
		야간	80,000	120,000	120, 000	160, 000	
			오전	30, 000	40,000	50, 000	70, 000
	체육관		오후	30, 000	40,000	50, 000	70, 000
소사국민			야간	60, 000	80,000	100, 000	140, 000
체육센터			09:00~18:00	400, 000	520,000	800, 000	1,040,000
	수영장		09:00~12:00	140, 000	182,000	280, 000	364, 000
			12:00~18:00	300, 000	390, 000	600, 000	780, 000
			오전	30, 000	40,000	50, 000	70, 000
서촌다목격	석체육관		오후	30, 000	40, 000	50, 000	70, 000
			야간	60, 000	80, 000	100, 000	140, 000
	테니스장(면당)		주간	30, 000	40, 000		
414-3(. 급 이		야간	45, 000	60, 000		
궁 도 장			주간	30, 000	40, 000		
중 도 상		야간	40, 000	60,000			

	정규경기장 (100m ×64m 이상)	조기	40,000	50, 000		
		주간	60, 000	80,000	150, 000	200, 000
		야간	160, 000	180, 000	250, 000	300, 000
	중경기장 (70m⋊5m 이상)	조기	30,000	40,000		
인조잔디구장		주간	40,000	60, 000	120, 000	170, 000
		야간	140, 000	160, 000	220, 000	270, 000
	소경기장 (70m≯5m 미만)	조기	20,000	30, 000		
		주간	30,000	40,000	100, 000	150, 000
		야간	130, 000	140, 000	200, 000	250, 000

- ㅇ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제외)에 준하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함.
-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육상장, 주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 징수하되,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은 2시간, 야구장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함.
- 유아,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체육수업은 체육경기에 준함.
- ㅇ 인조잔디 경기장의 야간사용료에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포함함.

연습사용료(제8조관련)

(단위: 원)

경기장별	사용구분	기 준	1인당 사용료		
경기장별		刀 正	개인	단체	
	육상트랙	1회 2시간	500	400	
	보조운동장	1회 2시간		1팀 10,000	
종합운동장	체력단련장	1회 2시간	1,500	1, 200	
	야구연습장	1회 2시간	1,500	1팀 10,000	
	인공암벽	1회 2시간	1,500	1, 200	
시민운동장	축구경기	1회 2시간		1팀 10,000	
원미운동장	축구경기	1회 2시간		1팀 10,000	
	체육관	1회 2시간	2, 500	2, 000	
부천체육관	체력단련장	1회 2시간	2,000	1, 600	
	보조운동장	1회 2시간	1, 500	1팀 10,000	
송내사회체육관		1회 2시간	1,500	1, 200	
	체육관	1회 2시간	1,500	1, 200	
소사국민체육센터		일반	3,000	2, 400	
소가 단세 파센터	수영장(1회)	청소년, 군인	2, 500	2, 000	
		노인, 어린이	2,000	1, 600	
서촌다목적체육된	<u> </u>	1회 2시간	1,000	800	
	평일	1회 2시간	2, 500	1면 10,000	
테니스장	휴일	1회 2시간	3, 500	1면 14,000	
	평일 야간	1회 2시간		1면 15,000	
	휴일 야간	1회 2시간		1면 21,000	
궁 도 장		1회 2시간	1, 200	1, 000	

- 단체사용료의 경우 축구경기 및 야구경기는 팀당으로, 테니스경기는 면당으로 각각 연습사용료를 계산하고, 기타는 20명 이상을 말함.
- ㅇ 공휴일은 전용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전용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연습사용 허용
- 월 사용료 = 1인당 사용료 ×20 (단, 테니스는 월사용료 30,000원)
- 개인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 월 사용료 ×5 이내
- ㅇ 시 대표팀 선수의 훈련을 위한 무상사용은 대회별 5일 이내로 한정
- ㅇ 자원봉사 마일리지 실적(증표표기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육시설 사용요금으로 인정
- 2명 이상 단체경기는 감면대상자가 경기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 참가할 경우 감면한다